

<b>의안 번호</b>	<b>1784</b>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】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6. 25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13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전도시국장 김종화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」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지역자율방재단 역할, 구성 사항 규정(안 제2조 ~ 제3조)
- 단장의 임기, 임무, 해임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역할, 협의회 구성 사항 규정(안 제7조 ~ 제8조)
- 회원의 임기, 회장의 임무, 협의회 운영 규정(안 제9조 ~ 제11조)
- 소집 규정(안 제12조)
- 운영, 출입증 발급 규정(안 제13조 ~ 제14조)
- 교육 및 훈련 규정(안 제15조)
- 중앙지원단 자문, 감독, 포상 규정(안 제16조 ~ 제18조)
- 재해보상금 청구, 유족의 우선순위 규정(안 제19조 ~ 제20조)
-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규정(안 제21조)
- 재해보상금 환수 규정(안 제22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0조 ~ 제65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-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현행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」 내에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추진 시 본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현실 체계에 맞게 구체적 조문으로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임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의 개정(2020.6.16.)으로 시행령 제61조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,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 이를 근거로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 조항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임무 중 질병, 부상 또는 사망 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 하였음
- 상위법 및 관련 규정 검토한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자연재해 대책법」

[시행 2021. 4. 20] [법률 제18090호, 2021. 4. 20, 일부개정]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

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2. 2. 22.]

## 「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」

[시행 2021. 1. 30] [대통령령 제30782호, 2020. 6. 16, 일부개정]

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지역자율방재단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6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>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1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[제목개정 2020. 6. 16.]

제62조(교육 및 훈련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·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63조(평가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·군·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64조(중앙지원단의 구성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
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65조(예산 지원)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